

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 촉구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년 8월 12일, 윤종호 의원 외 13명

나. 회부일자: 2022년 8월 1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

(2022년 8월 25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응답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: 윤종호 의원

나. 제안이유

○ 경상북도의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실효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을 건의함

다. 주요내용

-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법의 허점이 발생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고,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음.
- 상급학교 진학시기에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며, 전(前) 학년에서 발생했던 학교폭력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에 있음.
- 경상북도의회는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4항의 ‘배정’에 대한 적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교육부와 국회에 촉구·건의함.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박용조)

가. 제안취지

- 건의안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입법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고, 실제로 그 미비점이 악용되어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라는 법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.
- 우리나라는 전국 17개 시도에 고교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이 각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, 특히 경북의 경우 전체 23개 시군중 포항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비평준화 지역임.

- 동급생 간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처분조치 및 보호조치를 받게 되나 같은 영 제20조제4항의 ‘가해학생의 전학조치’에서는 상급학교 진학시 분리하여 배정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입안하면서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세부적인 구분을 두지 않고 있음.
- 경상북도의회는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4항의 ‘배정’에 대한 적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교육부와 국회에 촉구·건의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의 요지 주요내용과 같음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관계 상위법인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의 목적을 보면 “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,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”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.
- 같은 법 시행령의 제20조제4항에서 ‘가해학생의 전학조치’에 대하여 상급학교 진학 시 각각 다른 학교의 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평준화 지역의 입학전형권자(교육감 또는 교육장)와 비평준화 지역의 입학전형권자(학교장)가 서로 다른 점을 인지하지 못한 입법미비가 발생함.
- 따라서,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입학전형권자가 아닌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같은 영 제20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

에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함께 진학하는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.

- 살피건대, 본 건의안은 상위법령의 허점의 보완을 촉구하여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써 그 타당성과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